

#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

UK Non Tariff Barriers Issue

## 영국,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(한국산, 2024년 4월 30일 적용)



###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인 BTOM 구축, 동물성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 시행

영국은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효율적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BTOM(Border Target Operating Model)을 구축함.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되었으며, 한국을 포함한 비 EU국가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됨

- 배경** : 2023년 4월, 영국 내각사무처(Cabinet Office)와 환경식품농촌부(Defra)는 수입식품을 통한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불법 수입에 맞서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. 2023년 7월, EU산 동물과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을 그레이트브리튼(GB: 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웨일스)로 수입하기 위한 위험 분류 체계 및 위생검역(SPS) 체계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31일 시행함. 2024년 2월, 한국산을 포함한 비 EU산 동물성식품의 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예고함
- 주요 내용** (상세 내용은 공고 [원문](#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  - 지침 적용 대상** :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 EU 국가(한국 포함 23개국 대상)
  - 대상 품목** :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제품(살아있는 동물, 배아 제품, 동물성식품, 동물부산물 등)
  - [비 EU 국가 대상]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**

위험 분류	공통 준수 사항	위생증명서*	서류 및 화물검사	제품군 * 복합식품 외 상세 품목은 <a href="#">원문</a> 참고
낮음 (Low)	1. 사전 수입 통지 제출 (화물 도착 최소 1일 전) <a href="#">상품, 동물,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(IPAFFS)</a> 2. 지정된 국경통제소(BCP, Border Control Post)를 통한 반입	면제	면제 (단, 특정 위험이 있을 경우 검사 가능)	복합식품** (상온, 멸균제품)
중간 (Medium)		필요	검사 가능 (100% 검사 대상은 아님)	복합식품 (상온, 멸균제품 외)
높음 (High)		필요	검사대상 (기존과 동일)	-

\* 위생증명서(Health certificates) : 위생증명서는 [part1] 화물 세부정보, [part2]수출당국의 증명서로 구성됨. 위생증명서 작성 가이드는 [원문](#) 참고

\*\* 복합식품 중 「2007/275/EC」에 의해 공식적인 수입 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위험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음

#### 4) [비 EU 국가 대상]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\*의 수입통관 준수 요건 (원문)

구분	검역 규정 및 생산 요건	비고
①	영국 정부가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	수입승인 국가목록(원문, 2024.04.05 업데이트)
②	사용 원료는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	잔류물질 관리승인 국가목록 (원문)
③	복합식품에 사용된 육류, 우유 및 유제품, 계란, 수산물은 승인된 국가 및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	승인시설 목록(원문)
④	수출증명서 발급	
⑤	IPAFFS를 통한 사전 신고 및 BTOM 위험 카테고리에 따른 국경통제소 (BCP) 위생검역	BCP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: 2007/275/EC 조항 6항(원문)

\* 복합식품 :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, 동물유래 원료는 육류, 수산물, 젤라틴, 콜라겐, 유제품, 달걀, 꿀, 곤충을 말함

#### 3. 수입품에 대한 공통 사용자 요금(CUC, Common User Charge) 부과 제도 시행

CHED* 분류	구분	도버항 또는 유로터널을 통해 수입	도버항 또는 유로터널 경유 환적
동물성식품 (POAO)	저위험	위탁화물 건당 10파운드	위탁화물 건당 10파운드
	중간위험	위탁화물 건당 29파운드	
	고위험	위탁화물 건당 29파운드	
식물 및 식물성식품 (P&PP)	저위험	면제	면제
	중간위험	위탁화물 건당 29파운드	
	고위험	위탁화물 건당 29파운드	

다른 종류의 품목(최대 5품목)이 혼합된 복합위탁화물의 경우: 145 파운드 상한으로 부과

\* CHED(Common Health Entry Document) : 동물성식품과 식물 및 식물성식품이 EU 및 영국으로 수입 될 때 지정된 국경 통제소에 제시해야 하는 공식 통제 문서

#### 4. 시행일 : 2024년 4월 30일부터 (통관일 기준)

※ [참고]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BTOM 위험 분류에 따른 규정 적용

<https://planthealthportal.defra.gov.uk/trade/imports/imports-from/tom-risk-categories-from-non-eu-countries>

#### 출처

GOV.UK,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-EU countries to Great Britain: summary tables, 2023.3.26 (Updated)  
 GOV.UK, Check import risk categories and related rules fo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mported from non-EU countries to Great Britain, from 30 April 2024, 2024.3.26(Updated)  
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& Rural Affairs, UKCVO\_ BTOM \_update, 2024.04.02  
 식품의약품안전처, (영국) BTOM(Border Target Operating Model), 2024.04.05